

2025 퍼펙트 세법학 I 추록

유은중 저 | JDI북스 출간
2025년 4월 7일 발행

- 이 추록은 『2025 퍼펙트 세법학 I』 제16판에 적용되는 수정사항입니다.
- 이 추록은 출간 이후 세법개정사항 및 그 밖의 수정·보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I. 정오사항

면	행	종전의 내용	고칠 내용
1-70	하 6	109억원	119억원
2-146	상 3	〈추가〉	㉔ 다른 연결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등
4-90	하 9	2025년 3월 5일	2026년 3월 5일
4-90	하 8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II. 법률 추가 개정사항(2025.3.14. 개정)

면	행	종전의 내용	고칠 내용
1-41	상 4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인(아래 ㉔에 따른 상속 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봄)이 상속받은
4-97	상 3 아래 추가	〈신설〉	㉔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하 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4-97	상 4	㉔ 그 밖에	㉔ 그 밖에

Ⅲ. 시행령 확정에 따른 개정사항

1. 시행령 확정에 따른 수정사항

❑ 2-130쪽 하7~1행의 내용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 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함)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아래 ㉠과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수입을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
-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함)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 해당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포함함)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

2. 시행령 입법예고와 내용은 달라지지 않고 법문구만 정비된 부분

아래 내용들은 공포된 시행령 내용이 입법예고와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고 단순히 법문구만 수정된 부분들입니다. 1쇄의 내용으로 학습하셔도 되지만, 교재의 내용을 법조문의 내용 그대로 정확하게 수정하기 원하시는 독자분들께서는 이 내용들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	행	중전의 내용	고칠 내용
2-35	하 1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2-36	상 1 ~ 4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제104조의15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수입배당금 중 해당 투자나 출자로부터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금액)은 제외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외국자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수입배당금액(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금액)은 제외한다.

2-48	하 9~8	출자공동사업 외의 경우로서 해당 <u>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 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법인 등이 지출하는</u>	출자공동사업 외의 경우로서 <u>해당 조직, 자산, 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 지출하는</u>
2-48	하 7	<u>1) 비출자공동사업자 등 사이에</u>	<u>1)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u>
2-48	하 6	비출자공동사업자 등 사이에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2-49	상 1~2	* 비출자공동사업자 등 중 어느 하나의 <u>법인</u>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 중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 비출자공동사업자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 중 <u>해당 법인</u> 이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2-49	상 3	<u>2) 비출자공동사업자 등</u>	<u>2) 비출자공동사업자</u>
2-49	상 4	비출자공동사업자 등	비출자공동사업자